

구리시 공고 제 2024 - 693호

##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구 리 시 장

1. **공고내용** : 구리사랑상품권(구리사랑카드) 가맹점 지위상실

2.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5. 3. (15일간)

### 3. 법적근거

- 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나.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다.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4. **공고대상** : 총 3개소 ※ [붙임] 공시송달 대상 점포 참조

5. **의견제출기한** : 2024. 5. 3.(금)까지

6. **가맹점 지위상실 예정일** : 2024. 5. 7.(화)

## 7. 의견제출서류

구분	내용
필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견 제출서</li><li>• 하나카드 가맹점 가입확인서 : 가입확인서 상 카드 수수료율이 "<b>신용 1.25%, 체크 1.0% 이하</b>"인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가맹점 지위 유지 가능</li></ul>
추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수 운영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22~2023년), 사실확인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서 ※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li></ul>

8. 의견제출방법 : 방문접수(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이메일(yjin0949@korea.kr), 팩스(031-550-2100) 중 택 1

8. 공고장소 : 구리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9. 기타사항

가. 위 처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2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